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2970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최창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박종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이강혁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1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소1630695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 인테리어 관련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 통신판매중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1. 20.경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의뢰를 위한 디자인 제안 송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1. 27.경 원고에게 욕실 및 주방에 대한 디자인 제안을 송부하였다. 피고는 2021. 2. 3.경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이 103,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공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2. 8. 피고에게 계약금조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103,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하고 주방 1개 및 욕실 3개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 피고가 2021. 2. 9. 원고에게 공사기간이 2021. 2. 18.부터 2021. 3. 24.까지로

되어 있는 공정표를 제공

- 피고가 2021. 2. 18. 원고에게 디자인 시안(1차)을 제공,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

고에게 수정보완을 요청

- 피고가 2021. 2. 23. 원고에게 디자인 시안(2차)을 제공,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수정보완을 요청

- 피고가 2021. 2. 26. 원고에게 디자인 시안(3차)을 제공

라. 원고는 2021. 3. 5. 및 같은 달 10. 피고에게 “피고가 제공한 디자인 시안의 완성도가 낮고 이에 대한 원고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른 개선이 미비하여 이 사건 계약금 중 피고가 디자인 작업을 한 부분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기를 희망하니 2021. 3. 8.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그 후 원고는 다른 업체와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디자인 시안은 고객(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을 가리킨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그 수정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정의 최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1) 먼저 원고의 계약 해제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의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디자인 시안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673조 참조),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 및 이 사건 이메일 내용에 “이 사건 계약금 중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는 위 조항에 근거한 계약 해제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이 사건 이메일에 포함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공사대금의 규모, 이 사건 견적서상 ‘디자인 비용’ 항목의 액수,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그 진행 경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5,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 이 사건 계약금 10,000,000원 -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금 지급일인 2021. 2. 8.부터(민법 제548조 제2항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중연, 판사 최태영, 판사 선의종